

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의무화법 시행 안내


2017. 5. 26.일부터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 보장 및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해 대규모 건축물 등에 대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.

<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치장소>

구분	설치대상	설치장소		
		각 지하층	각 지상층	고시기준에 적합한 장소
1. 건축물 (연면적 합계 1,000㎡ 이상)	가.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(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2.공동주택단지 규정 준용)	○	○	
	나.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(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·터널·지하상가 및 지하에 건축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 포함)	○		
2. 공동주택단지	가.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	○	○	
	나.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(연면적 합계 1,000㎡ 이상)	○		
3. 도시철도시설	도시철도시설			○

■ 건축주/사업주체/도시철도건설사는 건축물 허가신청 또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방법 등을 협의대표*와 협의하여야 합니다.

* 협의대표 :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, 이동통신사업자 모두를 대표하여 협의를 전담하는 자



건축주/사업주체
↓
설치장소 및 방법 협의
↓
허가/사업계획승인 신청
↓
국토교통부, 지자체

■ **협의대표(한국전파진흥협회)**
이동통신사업자(SKTEL, KT, LGU+) 모두를 대표하여 건축주, 사업주체 등과 협의를 전담하는 기관

■ **설계신청시스템(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)**
o 전화 : 02-317-6030
o E-mail : help@rapa.or.kr
o 홈페이지 바로가기 ☞ <http://mobile.rapa.or.kr>